

울산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19가단1274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용강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주식 1,666주에 관하여 2019. 9. 20.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9. 4. 17. 원고와 협의이혼 하면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20일에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울산가정법원 2019호협10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2019. 4. 23.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그 후 C은 울산가정법원 2020느단5017호로 양육비 감액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21. 6. 30. ‘C이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0만 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을 하였다.

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였던 C은 2019. 9. 20. 주식회사 D의 주식 1,666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울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였던 C이 주식회사 D의 주식 1,666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C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C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면 본래의 주식소유자인 C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로서도 C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 대하여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에 대하여 양육비협약조서에 따라 이혼신고 다음날인 2019. 4. 24.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일인 2019. 9. 20.까지 약 5개월의 양육비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C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2019. 5. 14. 지급한 5,000,000원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C에 대한 위와 같은 미지급 양육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C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C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 책임재산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의 의사도 인정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된 이상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2019. 9. 20.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정